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결산

○ 당 초 예 산 : 185,011천원
○ 예 산 증 감 : 21,960천원
○ 예 산 현 액 : 206,971천원
○ 지 출 액 : 169,564천원
○ 이 월 액 : 0 원
○ 집 행 잔 액 : 37,407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8%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여비 34,115천원, 기타 사무관리비 300만원임.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206,971	169,564	0	37,407	18.0

사 업 예 산 계	119,819	116,527	0	3,292	2.7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119,819	116,527	0	3,292	2.7
자치경찰 제도 정비	119,819	116,527	0	3,292	2.7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119,819	116,527	0	3,292	2.7
일 반 예 산 계	**87,152**	**53,037**	**0**	**34,115**	**39.1**
기 본 경 비	87,152	53,037	0	34,115	39.1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2021년 6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로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사업비 이체 1억 1천 9백 8십 1만 9천원

▸「기본경비」 6천 5백 7십만 2천원

총 2개 사업, 1억 8천 5백 5십 2만 1천원을 이체하였음.

○ 2021년 6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로

▸「기본경비」 1천 1백 5십 2만 3천원

총 1개 사업, 1천 1백 5십 2만 3천원을 이체하였음.

○ 2021년 6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로

▸「기본경비」 9백 9십 2만 7천원

총 1개 사업, 9백 9십 2만 7천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1년도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당해연도말 1억 5백 3만 4천원으로

○ 총 수량 12개, 현재액은 1억 5백 3만 4천원임.

〈 2021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단위	정수	내용연수	구분	2020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1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합계				12		수량	-	12	-	-	-	12	-	-	-	-	-	12
						금액	-	105,034	-	-	-	105,034	-	-	-	-	-	105,034
1	2510 1509	전기 승용 자동차	대	2	8	수량	-	2	-	-	-	2	-	-	-	-	-	2
						금액	-	96,518	-	-	-	96,518	-	-	-	-	-	96,518
2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10	6	수량	-	10	-	-	-	10	-	-	-	-	-	10
						금액	-	8,515	-	-	-	8,515	-	-	-	-	-	8,515

Ⅱ. 검토의견

1. 세출결산

○ 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산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6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에서 사업비 2억 7백만원을 이체받았음.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2억 7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18%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1.6%보다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206,971**	**169,564**	**0**	**37,407**	**18.0**
사 업 예 산 계	**119,819**	**116,527**	**0**	**3,292**	**2.7**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119,819	116,527	0	3,292	2.7
자치경찰 제도 정비	119,819	116,527	0	3,292	2.7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119,819	116,527	0	3,292	2.7
일 반 예 산 계	**87,152**	**53,037**	**0**	**34,115**	**39.1**
기 본 경 비	87,152	53,037	0	34,115	39.1

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필요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1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9.94%를 집행(불용액 6만2천원, 불용률 0.05%)하였으며,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관리비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C=A-B)	주요 불용사유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76,000	76,000	0	
사무관리비	76,000	76,000	0	
ㅇ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 *: 1,000,000원*10회*	10,000	10,000	0	
ㅇ 자치경찰준비 TF 등 운영 *: 1,000,000원*10회*	10,000	10,000	0	
ㅇ 자치경찰 관련자료 인쇄비 : 5,000,000원	5,000	5,060	△60	자치경찰 조례 제정 관련 참고자료 인쇄비용 증가
ㅇ 자치경찰 제도 도입 대시민 홍보 *: 영상물 기획·제작 17,200,000원 + 카드뉴스 기획·제작 2,100,000원 + 인쇄물 디자인·제작 3,700,000원 + 부가세 등 2,000,000원*	25,000	21,340	3,660	낙찰차액
ㅇ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200,000원*5명*26회*	26,000	29,600	△3,600	· 추경 예산 편성 시, 위원회 미구성에 따라 참석수당 1인당 20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음 · 이후, 위원회 심사 안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사전 심사 수당(안건당 5만원, 1일 15만원 한도)을 규정하였음 · 제도 시행 초기 심사 안건이 많아 심사 수당 지급 소요가 높아 추가 집행이 필요하였음
기본경비	47,952	47,890	62	
사무관리비	47,952	47,890	62	
ㅇ 기본사무용 종이류	580	580	0	
ㅇ 소규모수선비	140	140	0	
ㅇ 행정장비 수리비	882	882	0	
ㅇ 도서구입비	275	275	0	
ㅇ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31,200	31,138	62	집행잔액
ㅇ 기타 소모품	4,875	4,875	0	

ㅇ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비용(인쇄비)	1,300	1,300	0	
ㅇ 실무협의회 운영비용(인쇄비)	1,500	1,500	0	
ㅇ 경찰통신비	2,400	2,400	0	
ㅇ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4,800	4,800	0	

- ‘자치경찰 관련자료 인쇄비’는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06만원(101% 초과지출)을 지출하였고,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2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천 9백 6십만원(113.8% 초과지출)을 지출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360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자치경찰위원회 미구성에 따라 참석수당을 1인당 20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나, 이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으로 사전 심사수당(안건당 5만원, 1일 15만원 한도) 규정하였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심사 안건이 많아 심사수당 지급 소요가 높아 추가 집행이 필요하였다고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자치경찰위원회예규, 제1호, 제정·시행 2021. 7.27)

제14조(수당 지급) ① 법 제26조제3항, 영 제16조, 영 제14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당의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 기본료 : 150,000원 · 초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화상회의	회당	· 기본료 : 150,000원 · 초과 : 50,000원	

※ 단, 화상회의의 경우 ’21.8.31.까지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기본료 50,000원, 2시간 이상 초과 시 20,000원)에 따른다.

2. 심사수당은 안건당 5만원으로 하되, 1일 150,000원을 넘지 않는다.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수당은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일시	회의개최명(차수)	참가자	참석률	안건	온라인 개최여부
21.6.29.	1차	7	100%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선정 건 등 2건	
7/2	2차	7	100%	서울시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건 등 3건	
7/9	3차	7	100%	심야시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경찰청 협조요청 건 등 3건	○
7/16	4차	7	100%	시의회 업무보고 등 7건	
7/27	5차	7	100%	자치경찰 인권보호 등 우수활동 사례 발굴·포상계획 건 등 3건	
7/30	6차	7	100%	2021년 하반기 경찰서 정기인사 건 등 4건	○
8/6	7차	7	100%	서울시·자치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단속 강화 지휘건 등 4건	○
8/13	8차	7	100%	서울경찰청의 중점 추진과제 보고에 관한 건 등 1건	○
8/20	9차	6	85.7%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편성 보고 건 등 7건	
8/30	10차	6	85.7%	불법영업 유흥업소 합동단속 결과 보고 건 등 2건	○
9/3	11차	6	85.7%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안)에 관한 건 등 4건	
9/10	12차	6	85.7%	「추석연휴 시민 편익 증진 계획」 수립 지휘에 관한 건 등 7건	○
9/17	13차	6	85.7%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출에 관한 건 등 6건	○
10/1	14차	6	85.7%	코로나 시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심의·의결에 관한 건 등 10건	○
10/8	15차	6	85.7%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안)에 관한 건 등 8건	
10/15	16차	7	100%	휴직희망(육아휴직) 경찰관 인사발령에 관한 건 등 3건	○
10/22	17차	6	85.7%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에 관한 건 등 9건	
10/27	18차	7	100%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에 관한 건 등 4건	○
11/5	19차	5	71.4%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 건 등 8건	
11/12	20차	7	100%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계획 수립 심의·의결 건 등 4건	○
11/19	21차	6	85.7%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 육성회 업무협약 관련 보고 건 등 9건	
11/23	22차	7	100%	신변보호 여성 사망사건 관련 보고 건 등 1건	○
12/3	23차	5	71.4%	주민체감사업 선정 의결 건 등 13건	
12/17	24차	6	85.7%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출에 관한 건 등 12건	

일시	회의개최명 (차수)	참가자	참석률	안건	온라인 개최여부
12/29	25차	7	100%	서울특별시경찰청「맞춤형 치안활동 강화」추진 결과 보고 건 등 9건	○

○ 2021년, 2022년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	결산	집행율	집행내역	비 고
2021년	26,000 (사무관리비)	29,600 (사무관리비)	113.8%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14,500 · 심사수당 : 14,100 · 교통비용 : 1,000	· 2021년 7월29일부터 온라인 회의 참석 수당 상향(5만원 → 15만원) · 심사 수당 부족분은 상반기 코로나로 미집행한 '자치경찰 제도 실시' 금액에서 집행
	5,000 (업무추진비)	5,000 (업무추진비)	100% (업무추진비)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후 식사 대금 등 집행	
2022년 4월까지	111,000 (사무관리비)	17,838 (사무관리비)	16.0%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9,150 · 심사수당 : 8,500 · 교통비용 : 188	
	2,000 (업무추진비)	1,491 (업무추진비)	74.6% (업무추진비)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후 식사 대금 등 집행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1]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회의 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되므로,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있어, 무분별한 편성 및 집행은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 불용 과다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중 ‘국내여비’ 예산현액(3천9백2십만원) 대비 불용률이 86.8%(집행잔액 3천4백만원)으로,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른 국내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있음.

〈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65,702	31,647	34,055	51.8%
사 무 관 리 비	26,502	26,492	10	0.03%
국 내 여 비	39,200	5,155	34,045	86.8%

▶ ‘국내여비’ 산출기초
- 기준단가 14,000원 × 정원 56명(파견 경찰관 13명 포함) × 0.5(6개월)

▶ ‘국내여비’ 불용사유 : 코로나19 국내 대확산에 따라 기존 계획 대비 시-경찰 합동 순찰 축소운영 및 국내 출장 등 감소

〈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현황 〉

정현원 기준일	위원회 정원/현원	구분(정원/현원)		
		일반직	정무직	경찰공무원
’21.12월말	43/60	38/36	2/2	3/22
’22.5월말	43/61	38/37	2/2	3/22

-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확대 등으로 ‘국내여비’ 집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의 감액조정을 하지 않아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처리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는바.

-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은 물론,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 불용이 예상 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욱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서도 '불합리한 여비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 발생'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국내 출장의 수요 파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16. 불합리한 여비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 발생

〔 자치경찰위원회 〕

가. 현황 및 문제점

국내여비를 모든 인원에 대하여 1인당 1,400천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39,200천원을 예산 편성함. 이 중 5,156천원 집행하고 34,04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86.8%에 이름.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음.

나. 시정권고

높은 불용률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인당 1,400천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임.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부터 전면시행된 사유로 과거 국내 출장과 여비의 발생 실적이 없어서 예산 편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은 과도함. 국내여비 집행대상인원의 선정,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국내 출장의 수요 파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권고함.

○ 또한, 2022년 5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3명으로 법령(「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실제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22명이며, 정원 외의 파견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복귀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령개정 노력을 통해 파견 경찰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 계급별	합계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총계	5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총경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경정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경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정관리 철저 요망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예산액중 국고보조금은 36개 사업 151억 9천 1백만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집행은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가 집행하게 되므로,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회계법」 제48조[2]에 따라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경찰공무원 324명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였는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용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결산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된 예산 및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사무 관련 원활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

□ 경찰공무원 회계관직 지정

ㅇ **법적근거 :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특례)

ㅇ **지정분야 : 총 8종**(회계 5종, 물품 3종)

– **(회계관리)** 서울경찰청(서)의 경무부서를 중심으로 회계관직 임명

: 기존 **경찰청 회계관리체계를 고려**한 회계 관직 운영으로 효율성·안정성 확보

구 분	관 직 명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회계관리	징 수 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재 무 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지 출 원	경리계장	경리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수 입 금 출 납 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2)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물품관리)** 서울경찰청(서)의 정보화장비과, 경무과 중심으로 임명

: 기존 **경찰청 물품관리체계를 고려**한 회계 관직 운영으로 효율성·안정성 확보

구 분	관 직 명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물품관리	물 품 관 리 관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물 품 출 납 공 무 원	정보화장비기획계장, 장비계장	정보화장비계장
	물 품 운 용 관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ㅇ **임명현황 : 회계관계공무원 324명 임명('22.2.21)**

ㅇ **임명절차 : 명단제출**(경찰관서) → **수합·임명요청**(위원회) → **임명**(재무과)

① 대상명단 제출		② 임명 의뢰		③ 임명
경찰관서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 재무과	⇨	재무과*
경찰관서에서 인사변동에 따른 임명 대상자 명단 및 서류 제출		명단 검토,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의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재무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담당부서

□ 효율적 예산 운영 관리

ㅇ **예산현황(국고보조금) : 36개 사업 15,191백만원**

ㅇ **집행체계 : 국고보조금 교부**(경찰청) → **예산재배정**(위원회) → **예산집행**(경찰관서)

– 예산재배정 : 정기배정(분기별), 수시배정(필요시)

▸ 서울경찰청/서별 월별/분기별 예산 집행 수요 파악 후 배정계획 수립

▸ 2/4분기 재배정액 : 8,976백만원

– 예산집행 :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별 집행

ㅇ **운영환경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

– 경찰공무원(회계관계공무원) 시스템 등록 관리 및 권한 부여

– e-호조 등 시스템 이용자 교육 실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문 숙